

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추가 개정 내용

1. 제안이유

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중 특별사후관리 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개정 사항임

* 품질기획팀-1733('19.8.23)의 규정개정(안)의 추가 개정 사항임

2. 주요내용

특별사후관리 심사 대상 관련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및 하자 발생·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기준 설정

- 1) 사후관리심사 대상 및 주기 등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내용 반영(제19조)
- 2) 하자발생으로 인한 특별사후관리심사 기준 설정 (별표 제7호)

* 군납규모를 기준으로 차등화

3.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9조(사후관리심사)</p> <p>① 사후관리심사는-----정기 사후관리심사와 특별 사후관리심사로 구분한다.</p> <p>1.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인증조직의 품질경영체제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중에 <u>연 1회 이상</u>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별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보담당부서 등의 요청</p>	<p>제19조(사후관리심사)</p> <p>① 사후관리심사는-----정기 사후관리심사와 특별 사후관리심사로 구분한다.</p> <p>1.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인증조직의 품질경영체제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중에 매년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별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보담당부서 등의 요청</p>	<p>「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」 개정 사항 반영 (명확화)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또는 인증업무주관부서의 결정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각-목의 심사 사유와 관련된 품질경영체제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.</p> <p>가. 품질경영활동 중 품질경영 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</p> <p>나.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산 요소의 중대한 변경(주요 공정 및 생산시설 변경 등)이 발생한 경우</p> <p>다. <u>인명의 손상, 재산의 손실, 법규위반, 범죄, 비리 등과 관련된 인증조직의 사회적 품질 이슈 또는 품질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 발생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여러 요소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</u></p> <p>라. <u>품질경영 활동과 관련된 뇌물 공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</u></p> <p><신 설></p>	<p>또는 인증업무주관부서의 결정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심사 사유와 관련된 품질경영 체제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.</p> <p>가. 품질경영활동 중 품질경영 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</p> <p>나.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산 요소의 중대한 변경(주요 공정 및 생산시설 변경 등)이 발생한 경우</p> <p>다. <u>물품의 결함으로 인명손상, 정부재산손실, 리콜 등과 같은 인증업체의 사회적 품질 이슈가 발생한 경우</u></p> <p>라. <u>품질경영과 관련된 법규위반, 범죄, 뇌물 공여, 비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</u></p> <p>마. <u>인증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</u></p> <p>바. <u>인증업체의 하자발생 횟수가 별표 제7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</u> (인증업무주관부서는 <u>이의 해당여부확인</u>을 위해 매 반기마다 전체 조직을 대상</p>	<p>문구명확화</p> <p>「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」 개정 사항 반영 (명확화)</p> <p>「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」 개정 사항 반영(원장 지시 및 보고 사항 반영)</p> <p>품질보증활동과 직결되는 심사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②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현장심사이지만 전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일 필요는 없으며,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심사팀은 제12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,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<u>시정조치</u>는 제17조에 따른다.</p> <p>⑤ ~ ⑨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으로 조사 하여야 한다.) 단, '라'·'마'항의 경우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한다.</p> <p>②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현장심사이지만 전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일 필요는 없으며,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동일)</p> <p>8.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, 내부시험, 식별과 추적성, 불합격품 관리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심사팀은 제12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,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<u>시정조치</u>는 제17조에 따른다.</p> <p>⑤ ~ ⑨ (현행과 동일)</p> <p>⑩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사후관리심사 결과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의뢰를 생략하고 방위사업청장(인증기획과장)에게 바로 인증 취소를 의뢰한다.</p>	<p>항목을 인증심사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여 품질보증활동과 연계성 강화</p> <p>오기수정</p> <p>「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」 개정 사항 반영</p>
<p><신설></p>	<p>【별표 제7호】</p> <p><u>하자 관련 특별사후관리심사 대상 선정 기준</u></p> <p>최근 3년 하자* 누적건수가 아래 표의 '군납액별 특별사후관리심사 요건'에 해당되는 경우</p>	<p>하자 관련 특별사후관리심사 대상 기준 명시</p>

현 행		개 정(안)					비 고
<신설>	구 분	배점					군납액별 특별사후관리심사 요건
	최근3 년 하자 누적건 수	1 점	2 점	3 점	4 점	5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0~50억원 미만 : 1점 이상 • 50~100억원 미만 : 2점 이상 • 100억원~200억원 미만 : 3점 이상 • 200억원~1000억원 미만 : 4점 이상 • 1000억원 이상 : 5점 이상
		2 건	3 ~ 4 건	5 ~ 7 건	8 ~ 10 건	11 건 이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용자불만사항 중 하자로 판정하여 하자처리요구를 한 경우(요구일자 기준 산정) * 동일계약·동일 로트·동일품목 에서 발생한 다수의 하자는 1건으로 산정 * 하자 누적건수는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사항만 해당